

(년 귀속)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		거주구분	거주자1 / 비거주자2
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		내·외국인	내국인1 / 외국인9
(단일소득·종교인소득자용)		거주지국	거주지국코드
관리번호	-		

① 기본사항	① 성명	② 주민등록번호
	③ 주소	④ 전자우편주소
⑤ 납세지	※ 12월31일(사망한 경우 사망일, 출국의 경우 출국일) 당시의 주소지등의 관한 지방자치단체명을 시·군·구 단위까지 적습니다. 다만, 납세지를 착오기재한 경우라도 「지방세법」 제95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.	
⑥ 주소지 전화번호	⑦ 휴대전화번호	
⑧ 신고구분	10 정기신고 20 수정신고 40 기한후신고	
② 환급금 계좌신고	⑨ 금융기관명	⑩ 계좌번호

③ 지방소득세액의 계산							
구 분						금 액	
⑪ 과세표준: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0호서식(5)의 ④ 과세표준란의 금액							
⑫ 세 율: 「지방세법」 제92조에 따른 세율을 참고하여 적습니다. ※ 세 율 표 (「지방세법」 제92조제1항)							
귀속년도		2018년~2020년		귀속년도		2021년~2022년	
		세율	누진공제액			세율	누진공제액
과세표준				과세표준			
1,200만원 이하		0.6%	-	1,200만원 이하		0.6%	-
1,200만원 초과 4,600만원 이하		1.5%	108천원	1,200만원 초과 4,600만원 이하		1.5%	108천원
4,600만원 초과 8,800만원 이하		2.4%	522천원	4,600만원 초과 8,800만원 이하		2.4%	522천원
8,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		3.5%	1,490천원	8,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		3.5%	1,490천원
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		3.8%	1,940천원	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		3.8%	1,940천원
3억원 초과 5억원 이하		4.0%	2,540천원	3억원 초과 5억원 이하		4.0%	2,540천원
5억원 초과		4.2%	3,540천원	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		4.2%	3,540천원
				10억원 초과		4.5%	6,540천원

⑬ 산출세액: [과세표준(⑪)×세율(⑫) - 누진공제액(⑫)하단 세율표 참고]	
⑭ 세액공제: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0호서식(5)의 ⑤×10%	
⑮ 결정세액: ⑬ - ⑭	
⑯ 가산세액:	무(과소)신고
무(과소)신고란에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, 납부지연란에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5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.	납 부 지 연
	합 계
⑰ 총결정세액: ⑮ + ⑯(합계란 금액)	
⑱ 기 납부한 특별징수세액: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0호서식(5)의 ⑥×10%	
⑲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: ⑰-⑱	

신고인은 「지방세법」 제95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,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.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.

년 월 일 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세무대리인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접 수 증(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)			
신고인 (대리인)	주 소		접 수 일
첨부서류	1. 장애인증명서(해당자로 한정하며, 종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) 1부		접수번호
	2. 기부금명세서(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5호서식) 및 기부금납입영수증(기부금공제가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) 각 1부		접수인 (서명 또는 인)
	3. 가족관계등록부(주민등록표등본에 따라 공제대상 배우자, 부양가족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하며, 종전에 제출한 후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) 1부		

※ 해당 첨부서류는 「지방세법」 제103조의59제1항 및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30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거나 수집하여 이용할 예정이오니 「국세기본법」 또는 「소득세법」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·납부 등을 한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